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64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장철민
임호선 · 박 정 · 안호영
어기구 · 김태선 · 문진석
정태호 · 박상혁 · 박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인력·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략 수립, 사업화, 정책 연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 및 경영상태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도약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6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약기업”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 사업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하여 성장하려는 소기업 및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4장에 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제62조의14(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도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략 수립, 경영·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

선텅

2. 사업화, 마케팅, 해외진출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3. 출연, 보조, 융자나 보증 등 금융지원
4.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약기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규모,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약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모별로 선정 요건 및 도약지원사업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도약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도약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약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 제3항에 따른 규모별 지원내용, 제4항에 따른 신청서의 발급 및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선정과 도약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5(도약기업 선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2조의14제3항에 따른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약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제 이행을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약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도약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6(도약기업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약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약기업 또는 도약기업과 관련된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약기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도약기업”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 · 신시장 진출 등 사업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하여 성장하려는 소기업 및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u> <u>제10절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u> <u>제62조의14(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도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1. 신사업 · 신시장 진출 전략 수립, 경영 · 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2. 사업화, 마케팅, 해외진출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3. 출연, 보조, 융자나 보증 등 금융지원
 4.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약기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규모,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약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모별로 선정 요건 및 도약지원사업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신 설>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도약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도약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약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 제3항에 따른 규모별 지원내용, 제4항에 따른 신청서의 발급 및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선정과 도약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5(도약기업 선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2조의14제3항에 따른 선

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
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
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4. 도약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하
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제
이행을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
약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도약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6(도약기업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약기
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약기업 또는 도약
기업과 관련된 기업·기관·단
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약기업 실태조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